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903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90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가단512928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4. 10. 10.

판결 선고 2014. 10. 3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가단512928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는 부분 및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A의 항소와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 A]

피고 A은 원고에게 40,49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2. 11. 1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1. 7. 18.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53,336,8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계좌(계좌번호 F)에 관하여 2012. 7. 11. 체결된 42,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 2) 피고 B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

가. 주위적 청구취지

- 1)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5. 31., 2011. 6. 1., 2011. 6. 2., 2011. 6. 3. 순차로 체결된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53,791,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6. 2.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계좌(계좌번호 G)에 관하여, 2011. 5. 31. 체결된 24,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1. 체결된 10,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2. 체결된 10,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3. 체결된 7,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1. 6. 3., 2011. 6. 7., 2011. 6. 8., 2011. 7. 1., 2011. 7. 6. 순차로 체결된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2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D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계좌(계좌번호 H)에 관하여, 2011. 6. 3. 체결된 1,48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7. 체결된 9,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8. 체결된 4,91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7. 1. 체결된 6,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7. 6. 체결된 2,5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2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A, B, C, D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A, B,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 C, D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 각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 A, B, C, D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들이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당부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 A에 대한 청구와 피고 B, C, D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J'라는 상호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표의 보증금액, 보증기한과 같은 내용으로 각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원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1	2009. 4. 13.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A	20,000,000원	20,000,000원	2014. 4. 11.
2	2009. 9. 21.	20,000,000원	20,000,000원	2013. 9. 20.		

1	2009. 4. 13.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A	20,000,000원	20,000,000원	2014. 4. 11.
3	2010. 4. 30.	10,000,000원	10,000,000원	2014. 4. 30.		

나.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시하여 3차례에 걸쳐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표의 각 '대출예정금액' 기재 상당액을 대출받았는데, 2011. 7. 14.경 음식점 사업을 폐업하면서 소외 은행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2. 3. 소외 은행에, ① 위 표의 순번 1 기재 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은행에 15,345,864원(= 대출원금 15,000,000원 + 이자 563,554원 - 일부 회수금 217,690원), ② 위 순번 2 기재 보증약정에 기하여 15,096,316원(= 대출원금 14,994,000원 + 이자 435,416원 - 일부 회수금 333,100원), ③ 위 순번 3 기재 보증약정에 기하여 10,048,550원(= 대출원금 10,000,000원 + 이자 310,430원 - 일부 회수금 261,88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하고 있는 이율은 연 15%이다.

라. 피고 A은 10여년 전부터 L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자 제부인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동생인 피고 C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 며느리인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교부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여 위 일식집 영업을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마. 또한 피고 A은 피고 B에게 부탁하여 위 일식집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고 위 일식집의 기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인 2011. 7. 11. L과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A이 L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 A은 2011. 7. 18. 위 일식집의 사업자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A의 계산으로 'J'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 B는 위 일식집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사. 위 일식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12. 7. 11. 종료되자 임대인 L은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잔액 42,000,000원을 입금하였고, 피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위 예금계좌에 남아 있던 돈의 대부분을 2012. 7. 20.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그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아. 또한, 피고 A이 사용하던 피고 C, D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있던 돈은 모두 출금되어 잔액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 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합계 40,490,730원(= 15,345,864원 + 15,096,316원 + 10,04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2. 11. 13.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하는 부분 및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① 2012. 7. 11. 피고 B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로 위 일식집 임대차보증금잔액 4,200만 원을 입금시킨 행위, ② 피고 C의 계좌로 2011. 5. 31.부터 2011. 6. 3.까지 4차례에 걸쳐 총 51,000,000원을 이체한 행위, ③ 피고 D의 계좌로 2011. 6. 3.부터 같은 해 7. 6.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3,890,000원을 이체한 행위는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전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들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위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위 각 예금채권은 모두 출금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예금채권액 상당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A은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신용상의 문제로 친·인척인 피고들에게 부탁하여 피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교부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여 위 일식집 영업을 하여 왔고, 피고 B 명의로 위 일식집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2011. 7. 18. 이후에도 피고 A은 예전과 같이 위 일식집을 운영하면서 위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한 사실, 위 일식집 임대차기간 종료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은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 A의 아들 계좌로 이체되어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계좌로 2011. 5. 31. 24,000,000원, 같은 해 6. 1. 10,000,000원, 6. 2. 10,000,000원, 6. 3. 7,000,000원을 각 이체된 사실,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2011. 6. 7. 9,000,000원, 2011. 6. 3. 1,480,000원, 2011. 6. 8. 4,910,000원, 2011. 7. 1. 6,000,000원, 2011. 7. 6. 2,5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므로(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참조), 피고 A이 피고 B, C, D에게 부탁하여 그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교부받아 여기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피고 A과 피고 B, C, D 사이에 위 피고들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기관과 사이에서 예금주는 수탁자이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등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예금 자체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자가 위 예금을 제3자에게 송금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는 행위 자체로도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예금 자체에 대한 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부동산과 달리 예금의 잔액이 없는 이상 예금 명의만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예금주 명의의 반환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예금 자체의 반환에 의할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4,200만 원도 곧바로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모두 소비하였고, 피고 C,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도 모두 피고 A에 의하여 출금되어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 피고 B, C, D가 채무초과 상태인 피고 A에게 자신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은 물론 위 피고들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C, D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자동차 명의이전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그의 동생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은 피고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위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증인 A의 일부 증언과 피고 C이 자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피고 A의 동생인 피고 C이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2011. 6.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 명의만을 이전받은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명의를 피고 C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 A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자동차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B, D,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자동차 명의신탁계약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 A과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B,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 D,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이영선

판사임효미

별지